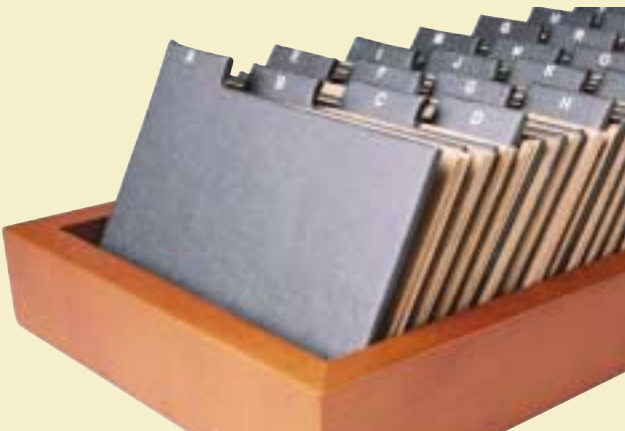


## Q & A

공 · 금 · 합 · 니 · 다

# Q & A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고정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고정 포로 가는 배관 중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고정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스트레이너의 마찰손실 등을 계산하여 설계하므로 그대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이너의 목적은 이물질로 인한 배관 내 막힘을 방지하고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스트레이너 없이 배관의 막힘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Q** 건축물에 층별로 설치되는 E.P.S실 등에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층별 구획은 되어 있음.)

**A**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E.P.S실 등을 통한 연소 확대는 수직으로는 층별 방화구획, 수평으로는 면적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E.P.S실 자체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실내 용적이 20m<sup>3</sup> 이하인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감지기 설치장소를 유심히 보시면 화재를 감지하기 어렵거나 화재가 아닌 상황에도 오보를 발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20m<sup>3</sup> 이하 정도의 실내 공간 체적이 작은 장소는 화재가 아닌 약간의 열 또는 연기에도 쉽게 충만하게 되어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화재보험 가입 내역에 보면 **계속할인, 적용할인,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료**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A** ● 1. **계속할인**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 연요율의 9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상의 유의사항]

- ① 계속계약보험요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이 경우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신규계약의 중도해지 후 체결한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전 계약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전 계약의 보험종기와 갱신계약의 보험시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약체결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계약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공동인수계약의 경우 간사사 여부에 관계없이 전 계약의 공동보험자와 갱신계약의 공동보험자 중 공통되는 보험자가 존재하면 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 **적용할인(개별할인)** : 이 할인할증 기준은 등급요율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율 산출시 개별 물건별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요율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아울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통해 요율의 손해방지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보험회사가 위험도, 손해율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약 5% 수준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료**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법률 제2482호) 제4조에서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동법 제5조에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시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화재위험보험료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 오피스텔 내 근린상가 층에서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면적비율이 10%가 안 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시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재보험 일반물건 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복합용도건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소개합니다.

- 1. 복합용도건물이란 건물구조 급별이 1급 또는 2급인 건물로서 직업종별요율을 달리하여 복수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 2. 동일업종이 점유하는 바닥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해당업종의 요율을 건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상의 유의사항]

- ① 이 규정을 건물동별 단위로 적용하며, 직업종별요율에 별도로 요율적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만, 주상복합건물(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물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 동일업종이란 직업종별 단위를 말하며 요율수준이 같은 다른 업종을 포함한다.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인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허가가 난 경우라면 상기 복합용도건물에 대한 특례 규정 2항에 해당하여 오피스텔 요율을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에는 주거용도를 제외한 상업용도 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특례 규정 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